

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2 . 2 김진석의원외 3인
- 나. 회부일자 : 2000. 2. 10
- 다. 상정일자 : 제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2.10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진석의원)

가. 제 안 이 유

- 지방의회 정기회 운영제도 개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조정(안 제2조 제2항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허해성)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문제점이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 :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저조례안1부 . 끝.